2023년 11월 15일 개정

승인일자 : 2023년 9월 26일

승인번호 : 자동차 23-45004-1-02

KB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약관

★ KB 손해보험







세상을 바꾸는 작은 노력! 'KB스마트 안내 수신 동의'를 통해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KB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

- 목 차 -

```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KB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 구성 | 3
   제1조 용어의 정의 | 3
   제2조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 구성 | 4
제2편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 5
 제1장 배상책임 | 5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 5
   제3조 보상하는 손해 | 5
   제4조 피보험자 | 5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5
  제2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 6
   제6조 피보험자 개별적용 | 6
   제7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1 6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6
  제1절 자기차량손해 | 6
   제8조 보상하는 손해 1 6
   제9조 피보험자 | 7
   제10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7
   제11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7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 8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 8
   제12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8
   제13조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9
   제14조 제출 서류 | 9
   제15조 가지급금의 지급 | 10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 10
   제16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10
   제17조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10
   제18조 제출 서류 | 11
   제19조 가지급금의 지급 | 11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 12
   제20조 보험금의 분담 | 12
   제21조 보험회사의 대위 | 12
   제22조 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12
   제23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 12
   제24조 공탁금의 대출 | 13
제4편 일반사항 | 13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 13
   제25조 보험계약의 성립 | 13
   제26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13
   제27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14
   제28조 청약의 철회 | 14
   제29조 보험기간 | 15
   제30조 사고발생지역 | 15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15
   제3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 15
   제32조 계약 후 알릴 의무 | 15
   제33조 사고가 발생한 때 의무 | 15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 16
   제34조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 16
```

제35조 보험계약의 취소 | 16 제36조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16 제37조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 16 제37조의 2 위법계약의 해지 | 16 제38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 17 제39조 보험료의 환급 등 | 18 **제4장 그 밖의 사항 | 18** 제40조 약관의 해석 | 18 제41조 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18 제42조 피본제동차 등에 대한 조사 | 19 제43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 19 제44조 보험사기행위 금지 | 19

제45조 분쟁의 조정 | 19 제46조 관할법원 | 19 제47조 준용규정 | 19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KB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KB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지급급: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 니다
-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 약품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 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 기.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 나. 부속품. 자동차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 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9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하거나 장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 건
 -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 (4) 부속기계장치
- 다. 부속기계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 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 장치를 말합니다.
- 6. 운전(조종):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자)·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자)·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 항·제148조(발칙) 및 제148조의2(발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 다
- 7.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8.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 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 며 이들 또는 이들의 피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
- 9.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 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하이패스 단말기)

-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다. 피보험자의 자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0. 휴대품 및 소지품

-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 나. 인명보호장구: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 이 포함된 것으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4)를 말합니다.
- 다.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9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 는 물품을 말합니다.6
- 11.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 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보험가액

-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13. **마약·약물운전:**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조(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취급업 자종합보험은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의 3가지 보장종목과 특 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이들 3가지 보장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 으 소해를 보상

목정보	보상하는 내용			
가때비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보상			
나때물바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 시>

납입할보험료 = 기본보험료 x 특약요율 x 특별요율 x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4) 얘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 (라이더지켓·팬츠·부츠 등 이와 유사한 일반의류는 제외)
- 5)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6) 예 : 휴년화기 노트북 캠크더 카메라 음성재생기(O) 골게이어 M3 골레이어 카네트테 이프 골레이어 등, 녹음기 전사수첩 전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기방 골프채 등

구분	내용
기비비칭크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기본보험료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E0to 9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요율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ЕНОО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특별요율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불량	사기보자 시전에 따라 저용하는 으으
할증요율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제2편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 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 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는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합 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에 사람 또는 물건 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 8. 피보험자동차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선박에 탑재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9. 음주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무면허운전자가 절취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 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 10. 피보험자동차를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에 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동업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2.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3.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4.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 5.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멸실, 파손, 오 손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동업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나.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다.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라. 피보험자의 고용주
 - 2.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 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 4.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④ 제①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6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②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 제6조(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①항 제1호, 제6호, 제10호를 제외합니다.
- ② 제①항에 따라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 지는 않습니다.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 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

- ② 제①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 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기급조치비용을 포함)
 -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 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 ③ 제①항의 「대물배상」의 경우 '공제액'은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 (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 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차량손해

제8조(보상하는 손해)

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제②항 내

- 지 제(5)항의 기준에 따릅니다.
- 1. 다른 차 또는 다른 물체⁷⁾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⁸⁾ 로 인한 손해
-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 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③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 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 ④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기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 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⑤ 경미한 손상9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 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10)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 상합니다.

제9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 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 11. 피보험자동차를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12. 피보험자동차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선박에 탑재 하여 운송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⁷⁾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 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8) &#}x27;참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하수 등에 피보함자동차가 빠자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참수로 보지 않습니다.

⁹⁾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기능한 손상

¹⁰⁾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1)로 인한 손해
- 14.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 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 15.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 16. 자동차의 제작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제11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 합니다

지급 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 + 비 보험금 + 생긴 손해액 + 용

비 - 보험증권 용 - 자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 ①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합니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 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에 서 정한 기준 포함)에 정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 제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에는, 그 부분품 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¹²⁾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 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4.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 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 출한 비용
- ③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3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 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 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⑤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11) &#}x27;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 를 훼손하거나 피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¹²⁾ 중요한 부분이란 엔진 미션 캐빈 적재함, 바디 및 전기차(하이브리드자동차 포함)의 모터, 감속기, 구동용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¹³⁾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 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가 발생한 때에 종료한니다.

⑥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12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대인배상」,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2.「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제13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 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 내에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①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149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저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보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대인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 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¹⁴⁾ 이자 계산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원금에 대한 후 이 합산액을 새로운 원금으로 계산하 는 이자계산 방법입니다.

예) 원금 100원/이지율 연 10% -1년 후 100원+(100원×10%)=110원 -2년 후 110원+(110원×10%)=121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 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14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 금을 청구하여야 한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1. 보험금 청구서	0	0	0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0	0	0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0	0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0
5.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시 말소 사실증명서			0
ː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시 이전서류		0	0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0	0
6.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이 경우 주리 가시 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사지 등이 경우 주리 가시 전 자동차점검 정비견 적선의 발표 등에 관한 자항은 보험회사는 구는 모든 서면으로 일일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구 리 가시 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를 받급하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가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0	0	0

제15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하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급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 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주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 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 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 14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16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

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¹⁵⁾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 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 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5)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④ 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 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 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 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 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 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 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역한 것으로 봅니다.
-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18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필요 서류 등	대배상I.II	대물배상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0	0
2. 손해배상청구서	0	0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0	0
4. 그 밖에 보험한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 라까시 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라까시 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 한 사항은 보험한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있으며, 보험한사는 수라까시 전 자동차점검. 정비견 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 견서를 수라까시 전에 회사하게 됩니다.)	0	0

제19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

¹⁵⁾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는 자급한 금액이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 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교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 및 피보험 자는 약관 제 46점사고발생 시의뒤에 따르는 의무사항으로서 그 권리(손해배상청구권 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때에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을 말합 니다.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 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 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 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 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 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 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 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18조(제출 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20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 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 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 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7조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 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 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①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제22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 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 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 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 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①항의 절차에 혐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①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24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①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자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28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 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 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 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26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¹⁶)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¹⁾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 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 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물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 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 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

^{16) &#}x27;부본'이라 함은 원본과 내용이 동일한 문서를 말합니다.

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 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 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 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27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 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 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 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청약의 철회) ① 일반금융소비자1가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수 있습니다.

- ② 제①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 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 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 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 전문금융소비자18)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3.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 ④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

¹⁷⁾ 일반금융소비자라 함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지를 말합니다.

¹⁸⁾ 전문금융소비자라 함은 보함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함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료서 국가 자방자자단체 한국은행 금융화사 주권방장법인 등을 포함해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방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 소비자를 말합니다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고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⑤ 보험화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나에 받은 보험료를 보 현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⑥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⑦ 보험회사가 제④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 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하 것으로 본니다.

제29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입니다.

제30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31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은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특별약관 기재사항
- 2.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사항
-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자동차의 탁송대수, 판매 또는 전시실적, 회사 규모, 종사원의수 등에 의하여 보험료가 정하여지는 계약의 경우 이와 관련한 자료를 포함
-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38 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제①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 습니다.
- 제32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 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 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37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특별약관 기재사항이 변동된 사실
 - 2.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 키는 사실(자동차의 탁송대수, 판매 또는 전시실적, 회사 규모, 종사원의 수 등에 의하여 보험료가 정하여지는 계약의 경우 이와 관련한 자료를 포함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 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사고가 발생한 때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 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 를 밟아야 합니다.
-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 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①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 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34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보험계약자.
-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 ② 보험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 자의 권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19에게 이전합니다.

제35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 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²⁰⁾

제36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 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 합니다.

제37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 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다른 사람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 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¹⁹⁾상속에 관해 민밥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을 말합니다. 20)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 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9조(보험료의 환급) 제3 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s)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8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①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 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 하였을 때
 -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 이 지난 때
 -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 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 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 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31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①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 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 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3.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제3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②항, 제31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③항 등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지급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보험회사가 제3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①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 릴의무 위반 사실은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31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①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 4.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 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여 제①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에 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 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9조(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② 보험회사의 고의교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 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 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 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 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교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 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제26조 제4 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제37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 3. 보험계약이 해지(제37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③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의 경우를 말합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 2. 보험회사가 제35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38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40조(약관의 해석)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1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① 보험회사는 제 32조(사고가 발생한 때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 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 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 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 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을 해지한 때 그 내용 및 사유
-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42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 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43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4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5조(분쟁의 조정) ①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 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 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46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47조(준용규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 을 따릅니다.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21)

_ 가. 사 망

항목 지급 기준	각 보장종목
2.위자료 기.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3. 상실 수익액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급한 금액)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등하여 산정(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될수에 해당한	항목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3. 상실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달을 균한 금액)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하여 산정(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	1.장례비
등에만 금액에 쉬입기능월수에 해당하는 오프만 계수를 들 하여 산정(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	2.위자료
(원석) (월평균형실소득액 - 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자급일 까지의 월수+보험금자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외거 1년 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수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급여소득자 되해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2급나 고해가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풀이> ②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가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적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답	

²¹⁾ 지급기준의 연령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연령으로 합니다.

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대) 서입소국사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 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 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봆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

- 〈산식 >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²²⁾ - (연간수입액×기준경비 율²³⁾) - 제세공과금1×노무기여율×투자비율

-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 순경비율²⁴)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 비를 공제함.
 -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 업자수'로 함.
 - 입사구도 임.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 을 적용함.
 -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 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 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 풀이>

-3∕2

-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 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 는 자를 말함.
-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 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 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 식> (공사부문 보통/반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

* 월 임금을 산출할 경우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 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 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 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 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

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 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 우에는 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 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 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용어풀이>

-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 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 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
-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기 마니 그로 느레이 아시에 먹다 소득한 산정말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 "일용근로사 범마다 기 밖의 유직자 의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중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 대한건설협회, 제도부문, 대한건설협회, 제도부문 증시시스는 중세급 세15호에 되면 중세급정 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보는 OT에도 그 다구로 단당된 나라, 사고발생 직중에 중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 명한 경우에 한함.
-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 일룡: 19세 이후는
-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 자 임금
-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 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 (6) 외국인
 - (가) 유직자
 -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 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 한 금액
 -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1/3
- 라. 취업가능월수
 -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 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 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 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 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_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10211 10 111111 111	10217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 능 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67세부터 76세 미만 76세 이상	36월 24월 12월

-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중에 종사 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중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 력 상실 당시의 일용구로자 임금을 인정함.
-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
- (5) 외국인
 -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 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 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소득기준을 적용함.
 - (C)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 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 를 말합니다.
 -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 마.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 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i=5/12%, n=취업가능월수

²²⁾ 매입비용(재한의 매입 기공비용, 완반비 등을 말하며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은 제외, 양자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 자산에 대한 암차료, 인건 비(종업원의 급여나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말합니다.

²³⁾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경비율

²⁴⁾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견비율

나. 부 상

자	동차손해배싱	보장법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힘
	항목	지급 기준
	1.적극 손해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 한 실비
	L 911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 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
		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 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
		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
		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 함.
		(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
		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
		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
		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 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
		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지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
		함)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 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
		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
		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 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2. 위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 원)
		급별 인정 급별 인정 급별 인정 급별 인정

	액		액		액		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 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 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3. 휴업 손해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 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용어풀이>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 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 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

<산식>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100

나. 휴업일수의 산정

-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 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 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 면 이에 의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 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 는 70세로 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 (1) 유직자
 -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 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 소액으로 함.
-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용어풀이>

-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

- 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 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 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 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 ~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 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 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어풀이>

①'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 가족관계증명서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4. 간병 НI

다. 지급 기준

-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 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 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 원기간을 인정함.
-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 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3)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 급함.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コ 밖의 손해 배상금

위 1. 내지 4.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 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I」은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тІ	그 기즈
	-	급 기준
1. 위 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나. 지급기준 : 노동능 (2)항에 의해 산정 지급함.	피해자 본인 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1) 노동능력상실률이 (가) 후유장애 판정 ! 인 경우: 45,000 (나) 후유장애 판정	50% 이상인 경우 당시 ^(*)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 ,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당시 ^(*)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 ,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네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 ^(*1) 피해자의 나이가 65 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 85%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 ⁽¹⁾ 피해자의 나이가 65 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
	(*1) 후유 (*1) 후유 우 ³ 연령	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 퇴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 ⁰	기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 원)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35% 이상 45% 미만 27% 이상 35% 미만 20% 이상 27%미만 14% 이상 20% 미만 9% 이상 14% 미만 5% 이상 9% 미만 0 초과 5% 미만	400 240 200 160 120 100 80 50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 유장애 위자료를 해당액이 더 많은 애 위자료로 지급함	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 참.
2. 상 실 수 익액	피해자의 월평균 률과 노동능력상실 수를 곱하여 산정	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 (함.(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 : 한도로 함)
	_ 〈산식〉 ——	
	력상실일부터 보험	(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 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 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 ⁽ (1) 유직자	방법

(가) 산정대상기간

-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 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 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 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 간으로 함.
-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 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6)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25)에 따라 일반 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 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혐의하여 정한 제 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호프만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3. 가정 가호비

가. 인정 대상

지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 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26)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 에 있는 자

-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 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 하다.
-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 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 (나) 침대에서 꿈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 하다
 -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 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 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 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 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 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지급 기준
1. 수리 비용	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지사고 직전의 상대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 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순상 수리기준 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품질인 증부품이란「자동차관리법」제 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
	(2) 열처리 도장료 수리할 때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 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하도로 함
	(가) 내용연주 ^(*) 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 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기액표」에서 정하

²⁵⁾ 미국 오클리호마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Earl D. McBride)가 1936년에 만든 노동능력상실평가방법입니다. 직업과 장아바위의 관련표로 산체의 장아를 백분율 (%로 평가하는 방법에 식물인간의 경우 100% 장아(율)입니다. 280여종의 직종별 계수 및 각종 산체부위 등이 연관되어 수천가지 이상의 상실율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성 되어 있습니다.

²⁶⁾ 장해로 인하여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품을 쉬늑할 때 실세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3. 대사료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무하는 기가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시 사용		
수리하지 않고 폐자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 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3. 대사료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무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		
3. 대자료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모하는 기가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	2. 교환 가액	수리하지 않고 폐자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기) 대자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 ⁽¹⁾ 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²⁾ .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²⁾ .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1)"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 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 비,높이)를 고려합니다. (*2)"통상의 요급"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립니다. (*2)"통상의 요급"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발립니다. (*3)"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 (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처종 ⁽¹⁾ 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하며, 이하 같음) 휴차로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1)"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 "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우수사업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3. 四外豆	기: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자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발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1))*등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 하이브리도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2)*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3)*'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의 무사한 차종으로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 차료 다만, 5분 이하 또는 변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론자동차(260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1)*'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 "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우수사업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자동차 되어 시 소요되는 동상의 요금의 35% 상당액(나) 「여객자동차우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등당의 대려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외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 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
4. 휴차료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 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 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사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보험개발원이 진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 기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 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 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
	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 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5. 영업 손실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기 이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다. 안성기군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안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 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6.자동차 시세 하락손해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채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 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기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3) 결포 우 2년 호파 3년 에어진 시중사

		: 수리비용의 10%
7. 용	견인비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언정기준액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운 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

<별표 3> 과실상계 등

글표 3> 파일(D- O
항목	지급 기준
	7. 과실상계의 방법 (1) (1) 이 기준의「대인배상」,「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와 압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입은 경우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치료관계비를 위선 보상한 후 피해자 측의과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수 있음. (*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과실비율을 적용받는자를모함한니다. 나. 책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전용기준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전용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한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 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 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4>의「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4. 기왕증	 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거을 말한니다
고한 중을 포함이는 것을 말합니다.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1)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1)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 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 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 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 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1,500만원 800만원 750만원 7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50만원		180만원 140만원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80만원 5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	보험가입금액			
등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부 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쥐 보험계약(출이율은 보험/발원이 공사하는 보험계약(출이율을 적용합니다.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상해 급별	보험 기입금액	상 해 부 위
급	3,000 만원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양안 안구 파멸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착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착수 손상을 동반한 청주 신연소상 또는 전위성호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불안정성 골반을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 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 을 시행한 상해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500 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홍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상해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상해 11. 대퇴골 경부 눈새 골절 전자하부 분쇄골절 과부 분쇄골절 경골과부 분쇄골절 또는 경을 원위 관절내 분쇄골절 경공과부 분쇄골절 또는 경을 위한상상해 11. 대퇴골 경부 눈새 골절 전자하부 분쇄골절 기부분쇄골절 경공과부 분쇄골절 모든 경을 위원한상하 등하 당하는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상해 13. 하토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성이심하여유리 파판술을 시행한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상해
3급	1,200 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

_		
		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에 하인데)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흥 또는 흥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 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 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자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 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즉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 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 당하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
		3. 구난구 난에 구글로 사이라 아에(따라게 글로, 이기 다니 이스 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흉부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
		4. 용구 소는 국립 논등으로 인증오립기를 시청한 중에(기원글게) 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순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해당한다) 8. 상완골 경부 골절
4급	1,000 만원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 ************************************
	긴면	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해당한다)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
		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금절 및 미금 골절을 포함하다)
		크로 옷 이글 글로크 ㅗ습한데)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37 -

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파판술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 즉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사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제 골절 5. 상완 신경충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속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측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구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함절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20. 슬관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건얼골절 18. 슬관질의 잘될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주관권절이 안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즉근골 골절(가을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근관절 소상이리스프랑 관점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주로구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관 소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관 소상으로 부절을 시해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4. 나라와 수요로 시경환증사의 건물인 상례소수요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관 소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_		
22. 허토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사행한 상해 25. 사지의 언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7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순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 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 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1. 상당신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줄을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5급 교관절 발문는 근위 경골의 건얼골절 18. 슬관절의 골절보상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줄을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료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건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모든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가골 만절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즉근골 골절(가골 만절을 시행한 상해 24. 사랑한 상해 26. 죽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자를 제외한 단일 쪽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릴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을 수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부율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부율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별관 소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별관 순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별관 순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별관 순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열관 소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진의 주요 일관 소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진의 주요 열관 순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진의 주요 일관 소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진의 주요 열관 순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진의 주요 열관 순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진의 주요 일관 소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진의 주요 일관 소생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진의 주요 일관 소생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진의 주요 일관 소생으로 수술을 시행한 32. 전원을 24년 31 전원을 24년 31 전원을 24년 31 전원을 32년 31 전원을 32년 31 전원을 32년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 향한 상해 25. 서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장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역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안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 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 승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형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감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요골 감우 부골절 기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감우 발전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비구 글 점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5급 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가 되는 관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건얼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오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오관절의 공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오관절의 공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오관절의 공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오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의 연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등 수성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3. 기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재건, 대퇴 사무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무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무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별관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별관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별관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별관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별관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별관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별관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발소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발소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고취 이상의 지과보절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조창, 괴사상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역 45 보다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민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 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에 해당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사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층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설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적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착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건열골질점 18. 슬관절의 관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죽관점 말건 모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즉관점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이스프라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구을 자점함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주근라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즉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무건 또는 대퇴 이무건 파열을 사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상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절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관 소상으로 사업한 수요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관 신경으로 상대로 안성되는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관 신경으로 상대로 안성되는 상해 32. 23치 이상의 지과보절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
26. 화상 좌창, 괴사장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역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순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사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적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교 골절 12. 수근라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글절을 들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통금 또는 근위 경을의 건얼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장과 골절 모든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했다) 23. 그 밖의 촉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을 사행한 상해 29. 사자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찬 신경으로 상업으로 사건성을 되었다. 설심 수상으로 사건성을 되었다. 설심 수상으로 사건성을 되었다. 설심 수상으로 수상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으로 상업성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5 사지이 여부 조직에 소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숙 또는 워거리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적 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사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의 구반된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결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공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3. 그 밖의 촉근골 골절(거그로) 사행한 상해 26. 촉근근과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을 사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실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주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결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착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글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0 만원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달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골절 및 달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공절 및 달구로 우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장망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곡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을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부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사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결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결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절될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절될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장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죽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즉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죽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부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부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절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 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 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 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청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글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달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골절 및 달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골절 및 달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공절 및 달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공절 및 모수 함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공을 경상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주관절 발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1.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그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밀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을 수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속 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착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공절 및 달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공절 및 달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강화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을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 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 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글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글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물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망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성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을 수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부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부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괴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 술하지 않은 상해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글 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철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절철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장과 말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0. 숙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즉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컨, 슬래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결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즉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글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공절 및 달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순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 않은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을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지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만원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성이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속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컨,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절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 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900 만원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을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우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품 골철(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2. 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기 방이 조근곡 곡적/거곡 및 종곡은 제이하다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순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순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지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시행한 상해
			32.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od 만원 1. 되온상으로 신경약등상이 경도인 상에(수물을 지행한 경우다	6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 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 으로 구물을 시행한 경구에 애당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
	의 기계의 (공학 기계의 30의 교육 기계의 20의 교육 기계의 20의 기계의 20의 기계의 20의 기계의 기계의 기계의 기계의 기계의 기계의 기계의 기계의 기계의 기계
	7. 혈흥 또는 기흥이 발생하여 폐쇄식 흥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 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의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18. 역을 구구구 물론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 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 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 ~ 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2. 아이 고점크 제거스의 비행하 사례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500 만원	3. 세계 = 교육 6. 건갑골 골절(건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 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건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
		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 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흥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8급	300 만원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인권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1 ~ 2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
		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급	240 만원	2. 2개 이하의 단순 늑 골골 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흥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0. 주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촉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 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200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급	200 만원	5. 외상성 상부관절외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l	160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급	160 만원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5.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_	120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12급	만원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 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3급	80 만원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
38	[반원	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7	50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급	만원	2. 수족지 관절 영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Щ.		그 점점된 단판 탁탁

비고

영역	내용
	1.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 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이하 "병급"이라 한 다
공통	2. 일반 외상과 치미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되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증납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외에서 배상하다
	요인과 하양 소성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는 큰 목의 상향 또는 큰 목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4.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일 때 소이로 안정하다
	5. 역부 조직에 순상이 심하여 유리파반술 유경 파반술 왕거리 파반술 국소 파반술이나 피부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 고 수부 촉부에 관하되 소상에 대하여는 하 등급 아란에 등급을 적용하다.
	1. 뇌손상이란 국소정 뇌손상인 외상정 두개강인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되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약당 중 가미막 당종, 두개골 골철두개 가자부 골절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 식소상을 포함한 뇌자상을 말한다. 2. 4급 이하면서 일식 이외에 보신경 손상이나(국소)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
두부	근 경우 반 중합 경영환경 가장이다. 3. 신경화적 중앙은 글라스가우 호수적도(G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 ~ 12점 경도는 13 ~ 15점을 말한다. 4. 글라스가우 호수적도는 잔잔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맞춰으로 한다. 5. 글라스가은 호수적도 평가 시 아시아 있는 상태에서 기파지 산태이 필요하
	등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e)와 반혼수(semicome)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은 경도로 준용한다. 7. 두피 좌상, 열광은 14급에 준용한다. 8.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사행한 경우에는 6급 2호에 준용한다. 9.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장에는 다른 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우기개월 이내 일당된 경우만 작용한다.
_{흉.} 복부	1. 삼당타박(급)의 경우. ①삼전도에서 Tachya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 정맥. ②삼초음파에서 삼당액증기소건이 있거나 삼장벽운동자하. ③삼당효 소차증기(CPK-MB, and Troponin T) 세기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착	1.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 우로 장하다. 2. 척추판 협착증이나 추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약화 된 경우는 9급에 준용한다.
	3. 석수 손성으로 인하여 산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에 준용한다. 4. 미디존호구의 청소소사에 주요하다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열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상	[2 2급구대 [1급까시의 3에 대충 중 개항경 글걸 또는 글구에서 가드걸도 2 형 이상(개방청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탁구에서마 1들구 상의 들구을 저용하다
99	3. 친구터 11급까지의 상해 대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 기되지 않은 각 등급 순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 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양촉 또는 단축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5.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하다 6.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7. 이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8. 관절 이단의 경우 상위부 절단을 준용한다 9.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 등 중용한다. 10.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 순 영화(간급)을 증용한다 11. 사지, 관절의 안공관절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하다 12 보존석으로 지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나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13.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14.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향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15. 분쇄 골절을 황상하는 골절산은 상상 골절이 아닌 골절산으로 판단한다.
16.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17. 근 건 안대 파열이라 항은 완전 파열을 의미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준용한다.
18. 사지골 골절 중 보면화하 상세트극에서 변드로 메시했다. 아오나다고 교육 12.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 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준용하다 18. 사자를 괄절 중 불명확한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사하지 않은 사자골 괄절 (견얼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3에 적용한다. 19. 사자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소의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당반된 경우와 연부조의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21. 주요 동백 또는 정백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백 또는 정백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밀해며 다 발성 혈관 손상이란 2부위 이상의 주요 당백 또는 정백의 손상을 의한다. 1.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1. 영구근로는 파르는 100 파르는 100 다 2.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2. 작년년 기계를 가지에 다른 사용을 구가 않는다. 6급의 건화별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제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 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4. 건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당 또는 건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건봉 쇄골인 상지 (16) 세르나 근로 로구 다르스 수도 나중 세르니는 내 세크는 나중 세르는 대 및 오구 세골인데의 완전 파양에 포함되고 경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 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 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영화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이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1. 영축 치금지 골절 처럼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2. 천골 골절 미골 골절도 괄박을 골절로 준용하다.

3. 슬관절 잡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갑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었음 축부인대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었음 축부인대 동시 파열 갑자인대와 축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등은 병급한다.

4. 학경골건 및 전염골건 파열은 속관절 축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이 등급을 준용한다.

5. 대답을 또는 경반을이 건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순상에 대해 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순상 등급을 준용한다.

6.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에 준용한다.

7. 고관점이란 대답급등와 골반골의 비가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 시에 관점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8.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인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9. 하지의 3대 관점이란 고관점 슬관점 족관절을 말한다.

10.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갑자인대의 파열은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하거나 안전 파딸에 준하는 파딸에 적용한다. 쟤 니는 기로에 다시는 싸달에 악당하다. 11. 골범회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 우 등을 포함하다. 완전 파열에 준하는 파열에 적용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비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관련)

장애		(음사단에 따로 살아 있다. 세 3 시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장애 걥별	보험 가입금액	신 체 장 해
1급	1억전 만원	1. 두 눈이 실명되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산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이야 하는 사람 4. 홍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이야 하는 사람 5. 반신매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지면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디리를 무릎구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무릎구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억3500 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시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소모과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이야 하는 사람 6. 충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 야 하는 사람
3급	1약천 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렇로 된 사람 2 말하는 가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가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품의 가능 또는 장신가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알생동안 노무에 종시할 수 없는 사람 4. 흥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알생동안 노무에 종 사 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기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억500 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가능과 음식물을 씹는 가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술도가나 그 오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판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디리를 무릎판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순의 소기점을 모두 제대로 모산게 된 사람 7. 두 살의 소기점을 보다 제대로 모산게 된 사람
뎗	9,000 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터로 된 시람 2. 한 필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필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림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가능 또는 정신가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오에는 종사할 수 않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오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7,500 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함. 고막의 대부분의 결소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거의 청력이 모두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나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잔혀 들리지 아나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근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층이나 뚜렷한 운동장아가 남은 사람 6. 학주 빨리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소의 5개 손기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암자손기락과 둘째손

		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6,000 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구인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구가 전혀 들리지 아나하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 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산경계통의 가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증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홍복부 장기의 가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증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자손기락과 둘째손기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자손기락과 둘째손기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자손기락과 둘째손기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당개의 손기락 또는 엄자손기락과 둘째손기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소기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충족관절 이상의 부가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빨에 가관점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점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기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1. 두 발의 발기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홍당가 남은 사람 13. 왕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4,500 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도 된 사람 2. 착주에 운동상에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악자는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악자는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악자는가락이나 둘째는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 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타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말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가 3센 가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막의 가만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있을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소장을 잃은 사람
9급	3.800 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시람 2. 항쪽 눈의 시력이 206 이하로 된 시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이합차 또는 시이결소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소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소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경상에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인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인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인 청력의 무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나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들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인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인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든지 못하고 다른 쪽 가입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든지 못하게 된 사람 10. 한쪽 손의 알지순기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소기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소기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1. 한쪽 손의 알지순기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소기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보의 말기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사기에 뚜렷한 장에가 남은 사람 15. 산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산기능에 장에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홍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에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사람
10급	2,700 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_		
		3. 14개 이상의 차이에 대하여 차괴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약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나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고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약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데 자전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물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영자손가라과 둘째손가락와의 가비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영자손가라과 둘째손가락와의 가비 손가락을 됐다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자손가락을 재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자손가라과 둘째손가락의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논의 영자손가라과 둘째손가라와이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생교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일이 양시발가락 또는 그 오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발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가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가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2,300 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바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온문장이가 나옵스 사람 2. 두 눈이 눈까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까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구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일어들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일어들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당대소기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당매소 가락에 전하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암자손가락과 물째손가락으로 가입 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빌의 엄자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홍복부장가의 가능에 집에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차이에 대하여 자괴보절을 한 사람
12급	1,900 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 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누인 눈까물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차이에 대하여 차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카타귀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홍골, 녹골 건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디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기운데손기라이나 넷째손기라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기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기라 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라 이는의 외에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양자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산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홍단가 남은 사람
13급	1,500 만원	1. 한쪽 논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사이협작 또는 사이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차이에 대하여 차마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왕자순가락 미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왕자순가락 미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동째순가락이 끝막을 잃는 사람 9. 한쪽 소의 동째산가락의 끝관절을 잡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닌가 1센티마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기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기락을 포함하여 27년) 발기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발기락 아하의 발기락 3개를 제대로 못쓰 게 된 사람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 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천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급	만원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자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와의 손가락 마다뼈의 일부 를 잃은 사람
		8. 한 손이 암자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와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무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기온데발기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 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하다.
-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1 이상을 잃거나 중수 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 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 (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7. '흥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 태를 말하다.
-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10.'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 11.'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12'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 는 종시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 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이외에는 노동 을 할 수 없는 시락을 말한다.
- 13.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 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전간(癲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사지에 경도(經濟)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 14.'홍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홍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 은 경우를 말한다.
- 15.홍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증등도(中等度)의 홍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6.'홍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 의 홍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 를 말하다.

KB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특별약관

- 목 차 -

1)	정비	수탁	다동차	특별약관	1	49
----	----	----	-----	------	---	----

①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 49

2) 자동차정비업자 특별약관 | 50

- ① 자기신체사고 추가특별약관 | 53
- ②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 55

3) 임시운행기간 위험담보 특별약관 | 56

- ①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납입 추가특별약관 | 58
- ② 임시운행차량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 58

4) 판매용자동차표 특별약관 | 59

- ①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납입 추가특별약관 | 60
- ② 판매용자동차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 61

5) 자동차 판매업자 특별약관 | 61

- ① 자기신체사고 추가특별약관 | 62
- ②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납입 추가특별약관 | 65

1) 정비수탁자동차 특별약관

제1조(회사의 보상책임)

-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KB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 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수리, 정비, 점검 또는 검사(이하 정비작업'이라 합니다)를 위하 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통상의 정비작업의 과정(피보험자동차를 수탁 또는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거쳐 차주에게 인 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만으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위'①'의 손해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 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 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피보험자)

보통약관'제4조(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 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 ② 기명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또는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유전하는 자
- ③ 위'①' 및 '②'이외에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 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제3조(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정비작업을 위하여 수탁중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차는 제외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악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통상의 정비작업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하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②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험계약의 해지)

- ①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 기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② 위'①'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개시되어 마지 막날의 오후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다른 시각을 기재하였을 때 에는 그 시각으로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

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2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단, 공동 인수 계약은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 ② 제①항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 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된니다.
-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①항 및 제②항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등으로 최고합니다. 서면으로 최고할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렴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 ④ 회사가 제③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그 전자문서의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①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제4조(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 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지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 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보험계약이 부활)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 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 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제①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해당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자동차정비업자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KB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 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8조(보상하는 손해' 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수리, 정비, 점검 또는 검사(이하'정비 작업'이라 합니다'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정비작 업의 과정(피보험자동차를 수탁 또는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 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만으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위'①'의 손해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

^{27) &#}x27;최고란 상대병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상 통지입니다. 따라서 '납입 최고란 보험계약자 등이 분활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그 미납보험료를 낼 것을 독촉하는 법률상 행위를 말하며 이때 보험계약자 등에게 주어자는 납압기간을 '납압최고기간'이라고 합니다.

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 는 손해를 보상한니다.

제2조(피보험자)

보통약관 '제9조(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를 말하며, '제4조(피보험 자)'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 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 ②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 전자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

제3조(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승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16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로 기명피보험자가 정비작업을 위하여 수탁중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배상책임에 있어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손해 이 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통상의 정비작업 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2.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② 회사는 자기차량손해에 있어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손해 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12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 및 피보험자동차의 도난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 장치만의 도난을 포함합니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 니다.
 - 2. 통상의 정비작업 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3.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4. 자동차부품의 수리, 대체 등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회사의 협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 임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여 드립니다.

제6조(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 구권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위 '①'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 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 2.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
- 3.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위'②'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때

제7조(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 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8조(보상하는 손해)'규정에 따라 지출 한 비용
- ② 이 특별약관 '제6조(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 험자가 회사에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8조(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대인배상
 - 회사가 대인사고로 피해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에서 대인배상I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I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I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2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이 불구하고 보상하여드립니다.
 -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 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② 대물배상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3조(보 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 는 1사고당 2,0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2'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 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③ 자기차량손해

회사가 때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8조 (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릅니다

-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피보험자가 직접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 2. 제 '1'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매 사고에 대하여 1,0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 도로 한니다.

제9조(보험계약의 해지)

- ①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 기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② 위'①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10조(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개시되어 마지 막날의 오후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다른 시각을 기재하였을 때 에는 그 시각으로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기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① 자기신체사고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수리, 정비, 점검 또는 검사(이하 '정비작업'이라 합니다)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정비작업의 과정(피 보험자동차를 수탁 또는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 차에 탑승중일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마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 액
- ③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 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 ④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 ⑤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 ⑥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 ⑦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 ⑧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 ⑨ 자동차부품의 수리, 대체 등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 ⑤ 통상의 정비작업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제3조(피보험자)

- ①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하며, 회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 하는 책임을 집니다.
 - 1. 기명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 2.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 3. 위 '1', '2'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 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 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법률상의 혼인 관계 로 인한 계자녀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①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사망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3. 후유장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위 '①'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 습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1. 실제손해액은 '<별표 1>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 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공제액

-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 I(정부보장사업²⁸⁾ 포함) 및 대인 배상Ⅲ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 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 습니다
 - 다.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단,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은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업무상 재해 등)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요 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4. 다만, '3' 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 지출한 치료비 (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해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 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해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

²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장사업으로, 정부에서 보유불명(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 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①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 2.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 3.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와 진단서,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위 '②'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③'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 으로 통지합니다.
- ⑤ 회사는 위(③)' 또는 '④'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 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6조(가지급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50% 해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는 가지급보험금청구서 등 회사가 꼭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②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 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단, 공동 인수 계약은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 ② 제①항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 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 ①항 및 제②항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최고합니다. 서면으로 최고함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

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 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④ 회사가 제③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그 전자문서의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①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제4조(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 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 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지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 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보험계약의 부활)

- ① 이 특별약관·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 지되고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 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 ②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해당 분할보험료를 영수 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임시운행기간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운 행허가(이하 '운행허가'라 합니다) 신청이 예정되어 있는 자동차인 경우에 한하 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기간)

-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마지막 날 24시 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정산특별약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은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회사의 보험책임이 시작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KB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이 특약 제2조(보험기간) 내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허가기간(운행허가를 받을 당시 정해진기간을 말하며, 최대 40일을 넘지 않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첫날로부터 다음중 먼저 발생되는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 1.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 24시
 - 2. 운행허가기간이 끝나는 날 24시
- 3.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의 유효한 대인배상1이 체결된 때 단, 피보험자동차가 매수인에게 인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규정 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 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 - 나. 「대물배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

- ③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 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 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 ④ 제①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 ⑤ 제()항의 「대물배상」의 경우 '공제액'은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 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 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대인배상 I」의 경우 보통약관 제5조(보험하지 않는 손해) 제 1항 및 제 2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에 한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제 1호의 고의로 인한 손해가 생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를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② 「대물배상」의 경우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 반 관련 사고부담금)

-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작목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대인배상I」또는「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당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1.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 한도 내 지급보험금
 - 2. 「대물배상」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 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 해 : 1사고당 5,0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 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 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피보험자)

-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가 매매된 경우 매수인(이하'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 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단,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 ⑤ 기명피보험자 또는 매수인의 의뢰를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탁송(운반)하는 자 ⑥ 이상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합니다)

제7조(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8조(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보통약관 제37조(보험계약자의 해자·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제30조(보험료 의 환급등) 제3항에 대해서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의 보험료의 환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 이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 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 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업종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 및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결제수단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계약자 명의의 결제수단에 한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보험계약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업종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 및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결제수단으로 보험료를 결제하고 해당 결제 를 제공하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사고 결제수단 계약) ① 사고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② 제①항의 사고 결제수단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1. 유효기간이 지난 결제수단
 - 2. 위조 변조하거나 무효 또는 거래정지가 된 결제수단

3. 보유자와 이용자가 상이한 결제수단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② 임시운행차량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임시운행차량 포괄계약에 관한 특별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합니다.)를 작성하고, '제3조(대상차량 현황통보)'에 따라 통보하는 전차량에 대 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임시운행차량 포괄계약에 관한 특별약정)

- ① 보험계약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시기 이전 에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② 약정서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범위
 - 2. 보험가입대상차량 통보에 관한 사항
 - 3. 예납보험료의 규모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와 협의를 통하여 위 '②'에 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조(대상차량 현황통보)

- 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는 매월의 초일부터 15일 까지의 대상차량 현황을 당월의 20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현황을 익 월 5일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가 위 '①'의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험계 약자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정산)

- ① 보험계약자는 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과거 또는 전월의 대상차량 실적에 따라 제시한 예납보험료를 약정서를 체결한 때 및 매월 1일까지 회사에 납입하 여야 합니다
- ② 제'①'항의 월별 예납보험료를 이 특별약관 제2조(대상차량 현황통보)에 의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정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예 납보험료와 정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드리며,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까지는 이미 정산한 보험료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하여 더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①'항의 예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제'②'항 의 정산보험료 중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차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보험계약자가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당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의 사 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4) 판매용자동차표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당사의 임시운행기간 위험담보 특별약관이나 이 에 준하는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험기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마지막 날 24시 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정산특별약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은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회사의 보험책임이 시작됩니다.

제3조(회사의 보상책임)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①항'의 손해는 피보험 자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동차의 등록, 검사, 설비, 운반 등 통상의 판매과정 에서 발생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 ② 위 '①'의 손해중 임시운행기간 위험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상합니다.
- ③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 간중 피보험자동차의 등록, 검사, 설비, 운반 등 통상의 판매과정에서 발생 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직접손해만으로 합니다.
- ④ 회사의 보상책임은 이 특약 제2조(보험기간) 내에서 운행허가기간(운행허가를 받을 당시 정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첫날로부터 다음 중 먼 저 발생되는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 1. 운행허가기간이 끝나는 날 24시 단, 운행허가기간 끝나는 날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허가기간의 첫날부터 10일째 되는 날의 24시
 - 2.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의 유효한 대인배상1이 체결된 때, 단, 피보험자동차가 매수인에게 인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피보험자)

-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 ② 피보험자동차의 제작회사(해당 피보험자동차의 판매사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자동차 판매업자 및 매수인
- ③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④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가 됩니다.

제5조(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하며, '제11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서 정의한 보험가액은 피보험자동차의 출고가격을 50만원을 단위로 하여50만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의 통상의 판매 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 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서 정한 업종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 및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결제수단으로 보 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 다. 단. 보험계약자 명의의 결제수단에 한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보험계약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업종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 및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결제수단으로 보험료를 결제하고 해당 결제 를 제공하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사고 결제수단 계약) ① 사고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② 제①항의 사고 결제수단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1. 유효기간이 지난 결제수단
 - 2. 위조,변조하거나 무효 또는 거래정지가 된 결제수단
 - 3. 보유자와 이용자가 상이한 결제수단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② 판매용자동차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통보하는 차량 전체를 포괄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 이 추가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대상차량 현황통보)

- 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는 매월의 초일부터 15일 까지의 대상차량 현황을 당월의 20일까지, 16일부터말일까지의 현황을 익월 5일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가 위 제①항의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험 계약자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정산)

- ① 보험계약자는 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과거 또는 전월의 대상차량 실적에 따라 제시한 예납보험료를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 10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 니다
- ② 제①항의 월별 예납보험료를 이 특별약관 제2조(대상차량 현황통보)에 의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정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예납보험료와 정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드리며,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까지는 이미 정산한 보험료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하여 더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①항의 예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제②항의 정산보험료 중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차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보험계약자가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당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의 사 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자동차 판매업자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판매용 신조자동차가 출고되어 영업점으로 운반된 후, 보험기간 중 영업점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출고일부터 인도 일이 10일이 초과하는 경우, 출고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의 24시. 이하 같 습니다,)까지의 등록, 검사, 설비, 운반 등 통상의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피 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 ② 위 ①의 손해중 피보험자동차에 채결된 임시운행기간 위험담보 특별약관 또 는 이에 준하는 상품에서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상합니다.
- ③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판매용 신조자동차 가 출고되어 영업점으로 운반된 후, 보험기간 중 영업점에서 매수인에게 인 도될 때까지의 등록, 검사, 설비, 운반 등 통상의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차 대차 충돌사고로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직접손해만으로 합니다.

제2조(피보험자)

보통약관 '배상책임'의 피보험자는 다음의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 라 합니다.)
- ②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제3조(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통상의 판매과정에 있는 신조자동차를 말하며, 임시운행기간 위험담보 특별약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품에 가입한 자동차에 한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① 통상의 판매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② 피보험자의 변동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2.피보험자'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 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험계약의 해지)

- (1)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효력발생 일자를 명기 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2) 위 '(1)' 의 해지 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험기간)

보상책임내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첫날 24시에 개시되어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자기신체사고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판매용 신조자동차가 출고되어 영업점으로 운반 된 후, 보험기간 중 영업점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출고일부터 인도일이 10 일이 초과하는 경우, 출고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의 24시. 이하 같습니다.)까지 의 등록, 검사, 설비, 운반 등 통상의 판매과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1)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 차에 탑승중일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 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 급하지 않습니다.
- ③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
- ④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 ⑥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 ⑦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 ⑧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 ⑩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지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 ⑪ 자동차부품의 수리, 대체 등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 ② 통상의 정비작업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마약 또는 약물 등이란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 ①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하며, 회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 하는 책임을 집니다.
 - 1. 기명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 3. 위 '1', '2'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 모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 는 배우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 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 ①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위 '①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 습니다.

지급 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 실제손해액은 '<별표 1>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 액을 말합니다.
 -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 출하 비용
 -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 I(정부보장사업29) 포함) 및 대인 배상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 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 습니다.
 - 다.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단,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은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업무상 재해 등)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요 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4. 다만, '3' 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 지출한 치료비(성 형수술비 포함), 후유장해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 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해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 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²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장사업으로, 정부에서 보유불명(뺑소나) 자동차 또는 무보 함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 ①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 2.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 3.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와 진단서,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위 '②'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③'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 으로 통지합니다.
- ⑤ 회사는 위③' 또는 '④'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 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6조(가지급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50% 해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는 가지급보험금청구서 등 회사가 꼭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②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업 종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 및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결제수단으로 보험계약 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계약자 명의의 결제수단에 한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보험계약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업종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 및 전자 금융거래법에서 정한 결제수단으로 보험료를 결제하고 해당 결제를 제공하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사고 결제수단 계약)

- ① 사고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 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② 제①항의 사고 결제수단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1. 유효기간이 지난 결제수단
 - 2. 위조.변조하거나 무효 또는 거래정지가 된 결제수단
 - 3. 보유자와 이용자가 상이한 결제수단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고객정보 취급방침

KB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KB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 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에도 불구하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수 있다.
 -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4.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5.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 6.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 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이에 따라 KB금융그룹은 KB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정보 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 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 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 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 습니다.

I.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 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 3.『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른 증권총액정보등 (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2항 참조)

II. 고객정보의 제공처

KB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KB금융지주(금융지주회사), KB국민은 행(은행 및 외국환업), KB증권(금융투자업), KB손해보험(손해보험업), KB국민타드(신용카드업), KB라이프생명(생명보험업), KB자산운용(집합투자업,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업), KB캐피탈(리스, 할부금융업), KB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업), KB신용정보(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KB데이타시스템(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입니다.

Ⅲ.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KB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 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②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③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 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 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⑤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개정 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 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⑦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연1회 이상 통지하는 등 고객의 자기정보 접근권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⑧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

- 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⑨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침입 등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 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 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 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KB금융그룹

KB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	KB국민은행	고객정보관리인	KB증권	고객정보관리인
KB손해보험	고객정보관리인	KB국민카드	고객정보관리인	kb라이프생명	고객정보관리인
KB자산운용	고객정보관리인	KB캐피탈	고객정보관리인	KB부동산신탁	고객정보관리인
KB저축은행	고객정보관리인	KB인베스트먼트	고객정보관리인	KB데이타시스템	고객정보관리인
KB신용정보	고객정보관리인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나. 고객은 영업장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하 '본인정보'를 제휴 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 는 것 및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 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 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 부가서비스 및 신상품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금융 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 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 : 🏗 1544 0114
- ·서면: 061-3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가입신청한 때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해당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 전화 : 🏗 1544 0114
 - . 인터넷: http://www.kbinsure.co.kr
 - . 서면 : 0613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 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 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 : 🗗 1544 - 0114

. 인터넷 : http://www.kbinsure.co.kr

. 서면 : 0613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본인정 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코리아크레딧뷰로㈜ :

☎ 02)708-6000 인터넷 www.koreacb.com

.한국신용정보㈜ :

☎ 1588-2486 인터넷 www.mycredit.co.kr

.한국신용평가정보㈜ :

☎ 1600-1533 인터넷 www.creditbank.co.kr

바. 본인정보의 유출시 피해보상 요구

KB손해보험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당사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손해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전화	02)6900-2114	(02)3702-8679	(국번없이)1332
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8, 9층 정보보호파트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